

의안번호	2219161
의 퇴 인	나경원 의원
회 답 일	2026.8.7.
추계번호	26C278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 신설 (종합 지원)	○ 피해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피해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2. 피해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3.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4. 의료비 지원 및 재활 지원 5. 그 밖에 피해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재량규정
		○ 피해보상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날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피해보상대상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지급함(제2항)	
		○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기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2	안 제6조 신설 (인과관계의 추정)	○ 제1항제1호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로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실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그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실에 관한 자료의 불충분 또는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제1항의 추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됨(제2항)	의무규정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기저질환 또는 그 밖의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제3항)	
3	안 부칙 제2조 (종합 지원에 관한 적용례)	○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함(제1항) ○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함(제2항)	
4	안 부칙 제3조 (인과관계의	○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추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함	
5	안 부칙 제4조 (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제7조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1항) -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제7조에 따른 보상위원회가 피해보상에 관한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의2(종합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3	안 부칙 제2조(종합 지원에 관한 적용례)	
4	안 부칙 제3조(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5	안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2. 상세 사유

□ 종합 지원(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국가가 피해보상대상자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본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및 재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 제5조제1항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및 재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가하려는 사항임
- 다만, 개정안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의 수준 및 상실 기간에 관한 사항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체계를 고려한 지원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단가 및 지원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및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할 수 있음

[표 1] 코로나19 피해보상 및 지원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상 및 지원 현황		건	집행액	건	집행액	건	집행액	건	집행액	건	집행액
보 상	진료비 및 간병비	1,712	332	20,219	3,348	2,450	1,259	290	233	71	18
	장애인일시 보상금	—	—	—	—	—	—	1	253	1	494
	사망일시 보상금	1	438	14	6,072	6	2,497	3	1,139	2	887

1)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 원	진료비 및 간병비	17	272	124	446	1,072	604	870	754	71	83
	사망위로금	-	-	8	700	2	200	1	100	1	100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 등	-	-	40	400	13	122	2	8	19	119

자료: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 생활지원금 소급 지급(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피해보상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날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피해보상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생활지원금 소급 지급 규정을 이 법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시행 전에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피해보상대상자에 대한 과거 기간분의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소급 지급의 기산일인 노동능력 상실일 또는 노동능력의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일자리는 피해보상대상자별로 상이하고, 사건별 의무기록, 장애정도 등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될 사항으로 현시점에 소급 지급 대상자의 수, 대상 기간, 1인당 지원금액이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인과관계 추정요건 완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부칙 제3조)

- 개정안은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와 기저질환 또는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이에 따라 피해보상 인용 건수가 증가하는 경우 현행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과 안 제5조의2에 따른 종합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부칙 제3조는 이러한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 중 법 시행 당시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보상위원회는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사건별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어, 종전 심의기준에 따라 ‘자료불충분’ 또는 ‘기저질환’ 등의 사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중 개정안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될 사건의 범위는 보상위원회의 개별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므로, 현시점에 기존의 기각 사건 중 새롭게 인용될 사건의 수, 신규 청구될 건수, 인과관계 인정률, 인정된 사건별 진료비·간병비 등 보상금액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4조)

-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현행법 제13조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새롭게 피해보상대상자로 인정되거나,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보상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현행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금과 안 제5조의2에 따른 종합 지원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이의신청 대상자 중 실제 이의신청을 제기할 인원과 비율, 재심 결과 기존 결정이 변경될 비율, 변경될 결정에 따라 사례별로 지급될 진료비·간병비·일시보상금·장제비 및 새롭게 피해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용될 안 제5조의2에 따른 종합 지원 규모가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assembly.go.kr